

사전청약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

-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는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이며, 금회 선정된 입주예약자는 추후 본청약 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 (apply.lh.or.kr) 및 LH모바일앱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하여야 하고,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에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(인터넷 미신청 및 당첨자서류 미제출시 당첨자 선정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일정 및 당첨자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- 금회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약자 모집을 위하여 건설 호수, 주택공급면적, 분양가격, 세대평면(팸플릿 참조) 등 기본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추정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본청약 모집공고시 제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, 사업지구 및 단지의 주변 생활여건, 시공관련 사항 등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-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입주예약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·재당첨제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,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.
-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,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'신청자격' 및 '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'를 충분히 안내,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, 제출일시를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별도 기간연장 없음)
- 해당 안내문외 자세한 사항은 추후 게시되는 사전청약 공고문(22.03.29. 공고예정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☞ 사전청약 홈페이지 www.사전청약.kr, 사전청약 상담콜센터 ☎ 1670-4007

1. 공급대상 및 일정

■ 공급대상

지구	블록	주택형	건설호수	사전청약 대상호수
인천영종	A24	74	180	165
		84	461	424
		계	641	589

※ 사전청약 입주자모집은 주택신청형별 대표면적을 대상으로 접수하며, 향후 평면설계 등 사업승인과정에 따라 동일주택형별 내에서도 면적 및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■ 일정

구 분	일 자	비 고
입주자모집공고	'22.03.29	LH 청약센터(https://apply.lh.or.kr) 사전청약 홈페이지(사전청약.kr)
특별공급 청약접수일	'22.04.11~04.12	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 및 사전청약홈페이지(사전청약.kr)에 게시하는 "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"을 통해 확정된 일자 및 접수장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

■ 신청자격

입주자모집공고일('22.03.29 예정) 현재 수도권[인천광역시, 서울특별시, 경기도]지역에 거주하며, 아래 각목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35조제1항제27조의2의 도시활력증진/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)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

추천대상자	청약통장 구비여부
·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	청약통장 필요없음
· 북한이탈주민, 장기복무 제대군인, 10년이상 복무군인, 우수 기능인, 중소기업근로자, 의사상자, 납북피해자, 다문화가족, 우수 선수, 대한민국체육유공자	청약저축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)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 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

아래 [무주택세대구성원] 전원(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)이 다음 [주택 및 분양권등]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

[무주택세대구성원]

- 가.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(이하 '주택공급신청자'라 함)
-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
- 다.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
- 라.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
-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

[주택 및 분양권등]

- 가.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나.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- 다. 나목에 따른 지위(이하 "분양권등"이라 한다)를 승계취득(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

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

- 입주자모집공고일('22.03.29 예정)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지 않는 분
- 입주자모집공고일('22.03.29 예정)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4조의 재당첨 제한 주택(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)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과거 3자녀 우선공급,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자 포함)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)
-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(국가유공자, 장애인, 지자체 철거민 제외)
-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 내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첨일로부터 1년)에 있는 분

■ 당첨자 선정방법

- 상기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 중 사전청약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신청한 분 (**(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불가)**)
-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·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·층별·향별·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 (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·호 변경불가)

3. 기타사항

- 해당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(당첨예정자)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('22.03.29 공고예정)상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를 통해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.
(미신청 시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불가)
-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 게시될 예정인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('22.03.29 공고예정)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, 타 특별 공급(다자녀 가구,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노부모부양)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,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1인 중복청약이나 세대원 중복청약으로 1세대 내 2건 이상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**부적격처리** 됩니다.
-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(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)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추첨 여부와 관계없이 **사전청약 입주예약자 선정 취소,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사전 청약 단지의 입주예정자로 선정 불가합니다.**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신청자격 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**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**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대상지구 위치도

